

영등포구의회
제13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5. 21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창의혁신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팀의 축소에 따라 2008. 6. 30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창의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이관하고자 함.

■ 개정내용

- 부구청장이 겸임하던 국단위 행정기구인 창의혁신단을 폐지하고 2008.6.30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창의혁신담당관을 기한 종료 후 폐지(안 제4조)
-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7조)
-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국가 행정기관 내 창의혁신 관련 업무 추진부서 및 팀 기구의 축소에 따라 창의혁신기구는 2005.9.5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2008.6.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임으로 이를 폐지하고, 창의혁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행정국 기획홍보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5. 21.

보 고 자 : 김 병 욱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